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4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4일

발 의 자 : 이영실, 김경영, 김경우,
김소양, 김용연, 김제리,
김혜련, 김화숙, 노식래,
박기재, 이병도, 이정인,
전병주, 조상호, 홍성룡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인격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며,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수적임.
-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(안 제7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7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〈신설〉</u></p> <p><u>6.</u> (생략)</p>	<p>제7조(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7.</u> (현행과 같음)</p>